

기후위기 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2023**년 예산 확충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22년 4월 26일**

공공운수노조·나라살림연구소·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한국노총·환경운동연합

# 목차

목차	2
기후·환경 분야	4
불확실한 SMR, 핵융합 개발에 예산 과다 투입 지양	5
석탄 발전 지원예산을 지역 대체산업 육성 예산으로 전환	6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7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확대 및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예산 추가	8
2030년까지 관할 해역의 30%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관리 예산 증액	9
해양보호생물 실태 조사 및 보전을 위한 예산 정부안 반영 증액	10
공공수역 녹조 독성 조사 및 관리 예산 증액	11
방치 및 폐기된 하천 구조물 철거·개선 예산 확대	12
한강 및 낙동강 녹조 독성 해결을 위한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기간 단축 및 예산 대폭 증액	13
물 환경 지표 개선을 위한 보 개방 사업 확대 및 모니터링 예산 확대	14
소득보장 분야	15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6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확대, 구직촉진수당 상향	17
전국민고용보험 전면 도입	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19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20
자활사업 양질의 일자리 확대, 노동자성 인정, 근로능력평가 폐지	21
위기상황에 긴급 대응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현실화	22
노숙인 복지 국가 책임 강화	23
국민연금 사업장 보험료 국고지원	24
국민연금 지역 보험료 국고지원	25
군복무·출산 크레딧 국고지원 확대, 직업훈련 크레딧 신설	26
사회서비스·의료 분야	27
국공립노인요양시설 확대	28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 확대	29
사회서비스원 직영 종합재가센터 모든 지자체 설치	30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차별 해소	31
필수노동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예산 책정 요구	32
공공병상 확충	33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 준수 및 지원비율 상향	34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	36
장애인 복지 분야	37
장애인 활동지원사 최저임금 보장	38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39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확대	40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4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국비 지원	4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43
아동 인권 분야	44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자원의 할당	45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대안양육제도 원칙 이행	46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입	47
후기청소년 대상 사업 개발 및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예산 신설	48
아동인권에 기반한 아동사법제도 운영	49
아동의 놀이, 문화 및 여가에 대한 국가 단위의 특화된 예산 필요	50
<b>공공 교통 분야</b>	<b>51</b>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 국비 보조	52
도시철도 노후 시설·차량 개선 지원	53
<b>노동 분야</b>	<b>54</b>
취약 노동자 소득보장 확대 예산	55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 요구	56
<b>국방 분야</b>	<b>58</b>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위한 핵·WMD 대응 체계 (한국형 3축 체계) 사업 예산 삭감	59
한국군에 불필요한 과잉 전력 경향공모함 예산 삭감	60
실효성 떨어지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예산 삭감	61

기후위기 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2023** 예산 확충 요구안

---

**기후·환경**  
**분야**

# 불확실한 SMR, 핵융합 개발에 예산 과다 투입 지양

## 1. 현황

- 폐기물 관리, 안전 문제, 부지 확보 등에서 상용화 어려우며, 경제성 또한 떨어지는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투자 및 수출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원전 수출 시 해당 국가가 IAEA(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에 가입해야 하며, 한국이 주수출국으로 고려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가입국으로 핵비확산 정책 채택, SMR 수출 시 미국 허가도 필요함.
- 또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항목, 기존 연구를 수정 적용할 수 있음에도 대규모 연구개발예산이 투자되는 등 연구 내용의 유용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 없이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핵융합연구분야 역시 2040년에도 상용화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등 기초연구에 국한하여 연구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운영비' 중 연구개발활동비 582억원,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에 1,300억 원 등 과다 책정된 예산을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음.

<표1> 관련 과기부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B-A)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R&D)	3,500	6,500	4,500	△2,000
해외시장 맞춤형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R&D)	-	5,800	7,550	1,750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79,892	89,112	92,351	3,239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R&D)	-	800	4,086	3,286

<표2> 관련 산자부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B-A)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45,374	64,400	63,274	△1,126

## 2. 요구사항

- 폐기물, 안전, 수용성, 경제성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상용화 시점마저 불확실한 SMR과 핵융합 관련 R&D 예산을 재평가하고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음.
- 재생에너지 확대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는 원자력 관련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투입을 재고해야 함.



# 석탄 발전 지원예산을 지역 대체산업 육성 예산으로 전환

## 1. 현황

- 국내 탈석탄 기조가 분명해진 시점에서 전반적인 석탄 투입 예산은 축소 및 일몰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임.
- ‘무연탄발전지원’과 같은 항목은 정부예산을 투입해 국내 무연탄 사용을 장려하고, 무연탄 사용으로 인한 손실까지 발전사에 보전해주려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탈석탄 흐름에 역행함으로써 발전사의 손실은 더욱 늘어나 2022년에는 전년대비 5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었음.
- 또한 ‘석탄비축자산구입비’와 같은 항목 역시 국회 상임위가 비축속도, 재고 무연탄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지적했듯이 퇴조가 분명한 석탄의 무조건적인 구매, 비축을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석탄비축자산관리비’ 역시 매년 11억 원 가량 지출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2004년부터 적자 누적 상황이며 완전자본잠식상태까지 달한 석탄공사 역시 정부의 출자금 지원으로 계속해서 뿔길로 수명을 이어가고 있을 뿐임. 오히려 석탄공사에 2023년부터 300억 원 이상의 투자계획이 예정되어 있으나 석탄공사가 이와 같은 탈석탄 흐름에서 더 이상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것이라 보기 어려움.

<표3> 관련 산자부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B-A)
무연탄발전지원	15,072	14,960	19,713	4,753
석탄비축자산구입비	2,659	2,273	2,137	△100
석탄비축자산관리비	1,188	1,188	1,188	0
대한석탄공사출자	31,632	28,469	27,143	△1,326

## 2. 요구사항

- 해당 예산은 석탄산업의 일몰을 준비하는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함
- 국내 무연탄 산업을 안정적으로 종료시키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역 대체산업 육성 및 폐업 지원, 노동자 지원 등의 예산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음.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 1. 현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의 급진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며,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내 30%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예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계통불안정성 문제로 급진 확대에 제약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며, 분산에너지자원이 확대될 미래 전력망에는 통합관제시스템이 필수적임. 즉, 배전계통에서 우선 생산될 전력을 제어하고 효율적 전력 수급, 관리가 필요함.
- 또한 제주 지역의 경우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출력제한 잉여전력의 활용을 타 부문 간 전환 및 연계하고, 계통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음 (열에너지 전환, 전기차 배터리 기반 DR시스템 등).

<표4> 관련 산자부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B-A)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	6,000	6,000	0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부문간 연계(섹터커플링) 기술개발(R&D)	-	-	6,000	6,000

## 2. 요구사항

- 향후 예정된 재생에너지 확대의 기반사업에 장기적으로 예산을 적극 투입, 증액 필요함.



#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확대 및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예산 추가

## 1. 현황

- 해양환경보전 프로그램에 속해있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예산 편성이 지자체에 대한 지원 비중.
- 현재는 국고보조율이 70%이나, 대부분의 해양보호구역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위치해 있어 해양보호구역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자체 자원 마련이 쉽지 않음.
-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영향평가를 위한 관리재원이 부족하며, 지역별 특색에 맞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고려해야 함.

<표5> 관련 산자부 예산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해양보호구역 관리	5,250	5,612	5,612	11,897	9,482

\*사업내용: 해양보호구역 자율형 관리체계 구축, 해양보호구역 인식증진 및 대외협력, 지자체 지원사업

## 2. 요구사항

- 향후 예정된 재생에너지 확대의 기반사업에 장기적으로 예산을 적극 투입, 증액 필요함.

# 2030년까지 관할 해역의 30%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관리 예산 증액

## 1. 현황

- 국제 비정부기구들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30%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을 신설해야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로 보전할 수 있어, 30x30 캠페인을 진행 중.
-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P4G 정상회의 공약, G7 정상회의 공약, Global Ocean Alliance 가입과 같은 새로운 정책적 수요에 따른 관련 목표(전체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등) 달성이 필요함.
- 국제협약의 의무 준수와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조사연구의 신설과 비용이 필요하고, 편성되어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함.
-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기준 2.46% 지정에 그친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4개로 확대 및 2030년까지 관할해역의 20%로 늘릴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주로 해안선 인근에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어, 해안 해역은 어업 등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붐비기 때문에 덜 유용할 수 있음.

<표6>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	8,480	8,696	8,696	10,733	8,904

\*사업내용: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해양생태계 내 잔류성 오염물질 조사,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EEZ 골재채취 관련 수산자원영향조사,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연구

## 2. 요구사항

- 2030년까지 관할해역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계획 및 지정 후보지 대상 조사 예산 증액이 필요함.
- 연안선 인근이 아닌, 무인도서 등을 거점으로 한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가 필요함.

# 해양보호생물 실태 조사 및 보전을 위한 예산 정부안 반영 증액

## 1. 현황

- 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경우 최대 서식지인 백령도뿐만 아니라 가로림만에도 서식하고 있으며,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 계획에 대비해 점박이물범을 보호할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 고래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고시)가 있으나, 현행 고래고시에서는 해양포유류 폐사 원인을 불법포획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며, 따라서 해양포유류 폐사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음.
- 상괭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폐사한 해양보호생물로 경남 고성에 보호구역이 적은 면적에 지정되어 있으나,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해양생물인 만큼, 연중 서식실태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함.

<표7>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	4,490	7,452	7,452	9,897	6,056

\*사업내용: 해양보호구역 인식증진 및 지자체 지원사업

## 2. 요구사항

- 미국의 동등성평가 대응하기 위한, 해양포유류 보호제도 개선이 필요함. 현재는 해양포유류 폐사원인을 분석하는 횟수가 20회로 한정되어 있어, 횟수를 늘리고 이에 따른 예산 증액도 필요함.
-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한 서식실태 조사 예산 증액이 필요함.
- 상괭이 보호를 위한 연구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황해 상괭이 보전 네트워크 운영 예산 증액이 필요함.

# 공공수역 녹조 독성 조사 및 관리 예산 증액

## 1. 현황

- 녹조(남세균)에서 발생하는 독성 성분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체내에 흡수될 경우 간암을 포함한 간 질환, 뇌, 생식기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녹조로 오염된 물의 직접 흡입뿐만 아니라 그 물로 재배한 농작물의 독성 축적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정부는 녹조가 있는 물로 농작물로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해 옴. 최근 우리나라 시민사회에서 쌀, 무, 배추 등의 농작물에서의 녹조독성 축적을 밝혀내 시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음. 그러나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녹조 독성관리 및 대응은 전무한 상황임.
-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현행 조류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함. 그러나 현행 환경부 조류경보제의 개선뿐만 아니라 녹조 독성의 농작물 흡착에 대한 조사와 연구, 개선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설계해야하는 상황임. 이를 위해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함.

<표8>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1 예산	2022 예산안(A)	2022 조정안(B)	증감률(B-A)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30,923	61,721	71,181	9,460

## 2. 요구사항

- 현재 유통되는 농산물, 어패류의 녹조독성 축적 조사를 위해 농림수산축산부와 공동으로 예산 증액 필요.
- 녹조 독성의 농작물 축적 예방을 위해 취양수시설을 통해 유입되는 농업용 하천수 조사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

# 방치 및 폐기된 하천 구조물 철거·개선 예산 확대

## 1. 현황

-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및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 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음. 특히 담수생태계 피해는 가장 위험한 수준으로, 지난 1970년부터 2016년까지 육상 생물이 38%, 해양 생물이 36%의 개체군 감소율을 보일 때 담수 생물은 81%의 감소세를 보임(지구생명보고서, WWF 2016). 이러한 추세에 EU 2030 생물다양성 전략에서는 담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2030년까지 25,000km의 강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힘. 또한 유럽연합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외부 자금을 두 배로 늘리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함.
- 우리나라 하천 또한 개발과 서식지 파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함. 보와 댐을 비롯한 하천 구조물은 하천의 연속성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장애물임. 서식지 환경을 훼손시키고, 수생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며, 수질오염을 악화시킴.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에 놓인 농업용 보는 33,779개(환경부)로, 지류·지천의 길이 대비 횡단구조물 수는 km당 약 1.2개 수준임. 이는 다른 EU의 주요 국가(독일, 0.5개/km)와 비교해도 많은 수치임.
- 현재 용도 상실, 파손 등의 이유로 서류상 폐기 처리되어있는 보의 숫자는 약 3,800개에 달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편성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은 연간 25개소의 횡단구조물 철거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지금의 계획으로는 방치된 보를 철거하는 데만 15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며 지체되는 시간만큼 생물다양성의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

<표9>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1 예산	2022 예산안(A)	2022 조정안(B)	증감률(B-A)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11,500	11,500	7,500	△4,000

## 2. 요구사항

-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 회복과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방치 및 폐기된 하천 구조물의 철거 및 개선. 관련 예산에 대한 대폭 확대 편성을 요구.

# 한강 및 낙동강 녹조 독성 해결을 위한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기간 단축 및 예산 대폭 증액

## 1. 현황

- 평균 기온 상승과 가뭄, 폭우를 반복하는 여름철 장마로 인해 녹조 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상황에서 4대강 유역에 들어선 16개의 보는 물의 흐름을 막아 원활한 물순환을 방해하고, 유속을 정체시켜 녹조 발생을 심화하고 있음. 녹조의 독성이 농작물 축적, 호흡기 흡입 등 다양한 형태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연구를 통해 제기되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철저한 녹조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2021년 2월 한강·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기후변화, 재해 등에 대비한 보 운영 여건 마련(안)」과 「낙동강 수계 취양수장 시설개선(안)」을 의결함. 이는 기후위기로 인해 폭우 및 폭염 등의 재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유사시 보를 개방할 수 없는 현행 보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임. 이로 인해 시설개선 예산이 확보되어 보 개방확대 여건은 조성되었으나, 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함.
- 현재 환경부의 「한·낙 취·양수장 시설개선」은 전체 사업기간 7년, 2022년 한 해동안 28개소를 개선하는 수준임.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 상황에서 그 시급성에 비해 너무 안일한 시간 계획임. 기후위기와 녹조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기인하여 전체 사업기간의 단축, 그리고 단축된 기간만큼 이행되어야 할 2023년도의 예산 대폭 증액을 통한 사업의 조속한 이행이 필요함.

<표10>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 한강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1 예산	2022 예산안(A)	2022 조정안(B)	증감률(B-A)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 한강·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	-	21,300	30,760	9,460

## 2. 요구사항

- 기후위기 시대 원활한 물순환 체계 구축과 녹조 문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하천법에 의거해 취양수 시설의 개선이 필요.
-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미루어 시설 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의 확대 편성해야함.

# 물 환경 지표 개선을 위한 보 개방 사업 확대 및 모니터링 예산 확대

## 1. 현황

- 4대강 사업으로 16개의 대형 보가 들어서며 각 유역은 물 흐름이 끊긴 채 “호수”화 되었음. 급격한 강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수많은 생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멸종위기종 개체수 감소로 이어짐.
- 보 개방 모니터링은 호수화된 4대강을 흐르는 강으로 돌리기 위한 사업으로, 닫혀있던 보의 수문을 열어 수변공간, 수질, 생태계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관측 및 분석하여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함임.
- 당 사업에 따른 보 개방 관측 결과 녹조, 퇴적물 등 물환경 지표가 개선되었고 멸종위기종의 출현 등 생물다양성이 회복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 환경부의 보 개방 모니터링 사업 취지에 입각하여 향후 보 개방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사업 예산의 확대 편성이 요구됨.

<표11>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1 예산	2022 예산안(A)	2022 조정안(B)	증감률(B-A)
지하수관리 - 보 개방 모니터링	24,470	19,600	19,600	-

## 2. 요구사항

- 4대강의 환경 지표 개선을 위한 보 개방의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관련 예산의 확대 편성을 요구함.

기후위기 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2023** 예산 확충 요구안

---

**소득보장**

**분야**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 1. 현황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음.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통해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정부는 2021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09.9억으로,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일 4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하고 그 보장기간 또한 90일에서 120일로 ILO가 정한 최소 수준(52주)에 미치지 못함.
- 세계 각국에서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 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를 확대하고 있음. 감염병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매우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음. 하루빨리 상병수당을 도입해 시민들이 걱정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표 12>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증감(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	-	10,990	10,990	10,990

## 2. 요구사항

- ILO의 하위기준 권고인 이전 소득의 최소 60% 이상의 금액과, 기간 또한 최소 52주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이를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반영해야 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확대, 구직촉진수당 상향

## 1. 현황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6개월)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
- 구직자취업촉진법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의 최대능력 기준 중위소득 60%, 재산합계액 6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정부는 법률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기준을(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50%, 재산요건 3억 원) 제시하여 지급대상을 축소함.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상황에서 제도를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함에도 정부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안에서 지급대상을 법률이 정한 최고기준보다 낮게 설정한 것임.

<표13>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 예산

(단위 : 백만 원,

%)

기능별 분류	2021년 예산(A)	2022년 예산(B)	증감(B-A)	증감률
국민취업지원제도	1,402,965	1,514,115	111,150	7.9

## 2. 요구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업부조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의 상한선 요건 개정, 구직촉진수당 상향, 지급기간 연장 등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며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함.

# 전국민고용보험 전면 도입

---

## 1. 현황

- 예기치 못한 감염병 때문에 실적이 증가하고,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심각한 일자리 감소를 경험하고 있음. 통계청(2021)에 의하면 실업자수가 전년대비 증가했고 특히 20, 30대의 실업자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sup>1</sup>.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이 임시직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불안정 고용상태에 놓인 계층에 집중되고 있음<sup>2</sup>.
-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도입을 먼저 제시하고, 12월에 로드맵을 발표함. 그러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약 2천만 명으로 늘리고, 고용보험체계의 기반을 임금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임. 그러나 감염병 위기 지속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매우 크고, 비전형적 불안정 노동자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안으로는 당장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없음. 따라서 고용 불안정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을 조기에 도입이 필요함.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소득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 2. 요구사항

- 모든 일하는 사람의 고용보험 전면 조기 도입하고, 가입 확대를 위한 보험료 지원 예산 마련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의 소득 보장을 위해 부분실업을 인정하고, 자발적 이직·퇴사에 대해서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장이 필요함. 이들을 포함하는 예산을 즉각 반영하고, 고용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예산을 책정해야 함.
- 무고용 영세자영업자의 가입은 바로 추진하고, 공무원·군인·교사도 의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sup>1</sup> 통계청(2021), 3월 고용동향

<sup>2</sup> 오상봉(2021), 코로나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 1. 현황

- 부양의무자기준은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폐지되고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재산 9억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는데 그침.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완화조치는 2020년 1월 중증장애가 있는 수급신청자를 시작으로 2021년 10월 모든 생계급여 수급신청자로 확대되었으나, 2020년 완화기준이 적용된 직후부터 해당 기준에 의해 탈락하는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및 완화조치 모두가 제외되었음. 복지부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지원제도,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본인부담상한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최저 보험료 인하를 통해 빈곤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음. 하지만 해당 의료보장제도는 모두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선지출한 뒤 환급받는 방식임. 의료급여 사각지대는 단 1만 원의 최저 보험료 체납을 반복하며 기초 의료이용을 포기하는 빈곤층으로, 보건복지부<sup>3</sup>에 따르면 비수급빈곤층의 미충족 의료 욕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경우 19.2%, 30~40%이하 가구의 경우 18.5%로 일반가구 4.6%나 수급가구 17.4%보다 높게 나타남. 복지부가 제시하는 의료보장제도들의 개선 및 확대는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과 동반되어야 할 과제임.
- 윤석열 당선인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을 하지 않았으나, 당선인과 단일화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0대선 후보 당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주요공약으로 채택했음. 아시아경제<sup>4</sup>에 따르면 의료급여 사각지대는 60만 명에 달하며 인수위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중증장애나 중증질환 등 특정 대상자에 한정하는 완화안에 불과함.
- 부양의무자기준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 탈락하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가족에게 위치와 상황이 알려지기에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지난 2020년 12월 사망한지 5개월 만에 발견된 방배동 김씨, 2019년 11월 사망한 인천 일가족 모두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 이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신청하지 않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였음.

## 2. 요구사항

- 부양의무자기준은 소득과 재산이 없음에도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생시켜 빈곤층의 즉시적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저해하고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2년 이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시 2023년 3조 4,0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sup>5</sup>했음. 이를 위한 즉각적인 예산 마련을 요구함.

<sup>3</sup>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sup>4</sup> 아시아경제, [단독] 인수위, '안·李 공약' 부양의무자 폐지 검토, 최종수정 2022.04.12. 12:32 기사입력 2022.04.12. 12:32 김혜민기자 부애리기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41312042902282>

<sup>5</sup>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93호, 의학신문에서 재인용, 진주영기자, 2020.10.26

#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

## 1. 현황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맞춤형개별급여로 개편되며 기준중위소득이 선정기준으로 도입되었고,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70여개 복지제도 선정기준에 사용되며,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기준중위소득의 30%(1인가구기준 58만 원)를 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음. 기준중위소득 도입의 취지는 빈곤선 설정에 있어 사회적인 수준을 반영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기준중위소득 도입 이후 인상률이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되어 옴.
- 2015년 도입 당시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562천 원으로 당시 소정근로시간에 의한 최저임금 1,166천 원 보다 약 40만 원 높았지만, 2022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944천 원으로 최저임금 1,914천 원과 비교해 3만 원밖에 차이 나지 않음. 이는 사회의 평균적 삶의 질 상승에서 빈곤층이 완전히 배제되었음을 의미함.
-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최근 3개년도 통계자료의 평균 증가율과 물가상승률 등을 산출근거로 결정하게 되어있음. 하지만 실제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산출근거를 무시한 채 예산에 맞춰 결정해 옴.
- 2022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결정할 당시 최근 통계자료 3년 평균증가율은 4.3%였으나 이에 70%만 반영함. 특히 2021년 인상을 결정할 당시 산출근거가 되는 통계자료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격차가 무려 12%에 달했지만, 이를 6년에 걸쳐 반영하기로 결정함. 더불어 당시 3년 평균 증가율이 4.6%였음에도 코로나 경제위기를 근거로 1%만 반영하며, 빈곤과 불평등이 확대되는 위기상황에서 복지의 전면적 확대가 필요한 현실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림.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예산에 맞춰 낮게 유지해 온 결과 1인 가구 기준 2022년 기준중위소득(194만 원)이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가구소득 중앙값(254만 원)보다 60만 원 적게 나타남.

## 2. 요구사항

-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있는 기준중위소득은 수급자들의 수급비를 낮게 유지하며 수급자들 삶의 질을 후퇴시킬 뿐 아니라, 복지제도가 필요한 빈곤층을 복지제도 바깥으로 밀어내며 빈곤문제를 악화시키고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림.
-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산출의 근거가 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상 가구소득 중앙값과의 차이를 조기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적극적인 기준중위소득의 인상, 현실화를 요구함.

# 자활사업 양질의 일자리 확대, 노동자성 인정, 근로능력평가 폐지

---

## 1. 현황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권”을 보장함. 조건부수급자가 참여하는 자활사업은 빈곤층에게 교육 및 기술 습득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 탈빈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자활사업 일자리는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낮은 수준의 임금이 책정되어 있음.
- 2022년 자활사업 일자리의 임금은 가장 낮은 근로유지형 일자리가 일급(실비포함) 30,120원, 임금이 가장 높은 시장진입형 일자리가 일급 58,660원에 불과함.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각 최저임금의 57.0%, 74.6%에 그침.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임에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자립과 자활을 돕는다는 목표와도 상반됨.
- 또한 과거 노동경험과 관련있는 일자리를 찾기 힘들고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기자 수가 많음. 특정 지자체들에서는 3개월 이상 대기하게 되는 경우 수급자 스스로 민간일 자리를 알아보겠다고 명시된 서류에 서명을 받고있는 상황임.
- 더불어 자활사업 일자리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강제에 가까움. 최근 2개월 의학적 평가가 근로능력평가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동하며 병원 기록이 없거나 실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강제노동을 조건으로 부과하며 조건 불이행시 수급권을 박탈하는 기재로 작동함. 2018년 장애등급제가 개편되며 근로능력없음 기준이 기존 ‘장애등급 1-4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바뀜에 따라 일반수급 자격을 유지해 오던 4급 장애인들의 근로능력평가 유예기간이 오는 22년 6월 만료될 예정임. 기존 4급 장애판정을 받았던 이들은 실제 노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노동이라는 조건이 부과되어 수급권이 박탈될지도 모를 두려움에 떨고 있음.
- 자활사업이 갖는 문제들은 일자리 참여자로 하여금 일자리에 대한 저평가와 자활일자리 ‘강제 근로’성격을 강화함. 자활일 자리는 사회가 빈곤층에게 보장하는 질 좋은 일자리이자 이를 통해 실제 탈빈곤이 가능한 계단이 되는 것을 지향해야 함.

## 2. 요구사항

- 근로능력평가를 폐지해야 함. 필요한 일자리 수를 파악하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욕구 조사, 대기자 수와 대기자들의 욕구 조사를 실시해야 함.
-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함.

# 위기상황에 긴급 대응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현실화

## 1. 현황

- 2022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은 2021년 대비 16.2% 큰 폭으로 인상되었지만, 절대액으로 봤을 때 1,856억 원에서 2,156억 원으로 300억 원 증가한 것에 불과하며, 2021년 추경예산이었던 2,771억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부양의무자기준은 없지만, 실직이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화재와 같은 자연재해 등 빈곤의 원인을 몇 가지 위기 사유로 협소하게 정의하며 정해진 위기사유가 아닌 위기상황에 작동하지 않고 있음. 예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급여의 경우 3개월 월세를 체납한 이후에서야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체납 3개월 전 퇴거 위기상황에는 작동하지 않으며, 이미 연체한 월세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아 위기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소득·재산기준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을 경유하며 재산기준을 기존 대도시 기준 1억8천8백만원에서 2억4천1백만원, 금융재산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비현실적인 수준임. 보증금이나 약간의 저축 또는 예금으로 인해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 대상이 되어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 액수와 기간이 위기상황을 해결하기에 불충분함. 2022년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급여는 488,8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급여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음. 더불어 위기상황의 종결과 관계없이 최대 6회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1회 이상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고 4회부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함.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제 3개월 이상 받기 어려움.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무엇보다 긴급한 위기상황에 빠르게 작동해야 하기에 ‘선 지원 후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최대 열흘 이상을 대기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하며, 위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청을 거절하거나, 선 조사를 통해 작년 소득을 근거로 거절, 구두로 재산을 확인하고 지원을 거절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 2. 요구사항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집행률이 높아 매년 추경을 반복하는 제도임. 긴급한 상황에 빠진 이들을 예산을 이유로 배척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반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해야함.
- 빈곤을 마주한 이들의 위기는 예측할 수 없이 다양함. 선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필요한 모든 이들을 지원할 수 있게 예산을 확대할 것을 요구함.

# 노숙인 복지 국가 책임 강화

---

## 1. 현황

- 홈리스상태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숙인복지법」에 배정되는 정부예산은 요양·재활시설 예산이 전부이며, 홈리스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노동, 의료, 급식 등 권리보장에 대한 책임은 임의조항으로 지자체에 이양되어 있음. 이로부터 지자체 내 홈리스가 있지만 노숙인복지를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을 뿐 아니라 노숙인복지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들 모두 최소한으로만 실시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상황에서 홈리스상태에 있는 이들은 감염의 위협과 더불어 ‘급식대란’, ‘의료공백’, ‘뜨개기고용’, ‘강제퇴거’와 같은 일상의 반복된 위기를 중복하여 마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실시하는 재난지원금과 백신 등 코로나19 관련 대책에서 배제되었음.
- 하지만 현재에도 급식은 민간에 맡겨져 있고, ‘노숙인진료시설지정제도’를 통해 지정된 병원만 이용가능하게 하여 발생하는 의료공백 문제도 계속되고 있음. 바이러스와 일상에서 안전하지 않은 쪽방, 고시원 방값의 한시적 지원이 주거지원의 전부이며 양질의 공공일자리 공급 대신 불안정 민간일 자리를 강조하고 있음. 이마저도 시설을 경유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음.
- 국내외 홈리스정책의 기초가 시설 중심의 정책모형을 폐기하고 ‘주거우선’으로 전환되지 오래이나, 국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지자체들 역시 눈치 보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최소한의 지원만 실시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홈리스정책은 여전히 시설입소 중심의 정책으로 홈리스의 주거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장기화하고 있음.

## 2. 요구사항

- 현재의 노숙인복지는 인권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점이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통해 극명히 드러났음. 홈리스상태에 처한 이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와 삶의 기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숙인복지의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 국민연금 사업장 보험료 국고지원

## 1. 현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 연금 수급권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의 경우, 전체 분석대상 중 10.5%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두루누리 사업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각지대가 큰 것은 사실이나, 10~30인 미만의 경우도 사각지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노동자의 99%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음(국민연금연구원, 2019).
- 그러나 정부가 2018년부터 지원기간을 36개월로 제한하였고, 2019년 기가입자 지원율을 하향했으며, 2021년부터 기가입자 지원을 제외하는 등 지원 제도를 축소함.

<표1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변화

연도	월평균 보수	지원수준	비고
2012	125만원 미만	최대 50% 차등지원	
2013	130만원 미만	최대 50% 지원	
2014	135만원 미만	50%지원	
2015	140만원 미만	50%지원	
2016	140만원 미만	최대 60% 지원	신규지원자 확대지원, 고액 자산근로자 지원제외
2017	140만원 미만	(신규 60%, 기존 40%)	
2018	190만원 미만	최대 90% 지원 (신규 90%, 기존 40%)	36개월로 지원 제한, 신규지원자 개념 확장(3년 이내 사업장 가입이력 없는자 → 1년 이내 사업장 가입 이력 없는자)
2019	210만원 미만		
2020	215만원 미만	최대 90% 지원 (신규 90%, 기존 30%)	기가입자 지원율 하향
2021	220만원 미만	최대 80% 지원 (신규 80%)	기가입자 지원 제외
2022	230만원 미만		

## 2. 요구사항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노동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함.

# 국민연금 지역 보험료 국고지원

## 1. 현황

-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완화 및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영세자영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대부분이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임.

18-59세 총인구 32,129천명					
경제활동인구 23,167천명					
국민연금 가입자 21,718천명					
비경제 활동 인구 8,705천명	사업장가입자 14,157천명		지역가입자 7,232천명		특수 직역 연금 가입자 1,706천명
	임의 가입자 329천명	소득 신고자 3,955천명		납부 예외자 3,277천명	
		장기 체납자 1,062천명			

<그림1> 공적연금 가입실태(2018년 12월말 기준)

- 실제로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민 지역가입자와 비교하여 보험료 지원이 없는 도시지역 가입자의 체납자 비율이 약 3.5배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제4차 재정계산(2018) 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 제4차 종합운영계획(2018.12.14.)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제도를 제안했고, 지역 납부재개자에 대한 최대 12개월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2020.1.)되었으며, 올해 7월부터 지원 예정임.
- 그러나 이 개선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로 국한하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사각지대를 해소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2. 요구사항

-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농어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수준) 예산을 배정 해야 함.

# 군복무·출산 크레딧 국고지원 확대, 직업훈련 크레딧 신설

---

## 1. 현황

-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실제 군복무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6개월만 지원되고 있으며, 인정소득 또한 A값의 50%만 반영하고 있음.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상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음.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저출생 시대에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첫째 자녀까지 혜택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군복무 크레딧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면서 출산 크레딧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
- 불안정 고용 증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이직·전직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단절이 발생하고 있음. 2030세대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은 미국, 일본 대비 저조한 상황임. 독일, 영국은 직업훈련 과정에 있는 청년들에게 8년, 1년의 직업훈련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듯이 직업훈련 크레딧을 도입시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 제공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2. 요구사항

- 군복무 전기간을 인정하고, 인정소득 A값 50%에서 100%로 확대하기 위해 군복무 크레딧에 2,002억 원을 책정해야 함.
- 첫째 자녀부터 자녀 당 12개월 전액국고로 사전 지원을 위해 출산 크레딧에 1조 698억 원을 반영해야 함.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참여자, 한국폴리텍대학 수료자, 실업자 및 취약계층 훈련 참여자에 대하여 6개월간, 인정소득 A값 50%의 직업훈련 크레딧 제공을 위한 1,982억 원을 배정해야 함.

기후위기 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2023** 예산 확충 요구안

---

# 사회서비스·의료 분야

# 국공립노인요양시설 확대

## 1. 현황

- 코로나19를 계기로 노인장기요양의 공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지만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 우리나라의 국공립노인요양시설은 전체의 약 2-3%에 그치는 수준으로 대부분의 시설이 민간에 맡겨 운영되고 있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
-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지난해보다 49억 원이 감소한 619.9억 원임. 이는 2021년 377억 원에 이른 노인요양시설 방역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의 영향을 받은 금액으로, 공립 일반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예산은 배정되어 있지 않고,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예산만이 총 48개소에 대해 44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노인요양시설의 국고보조율은 일반형의 경우 50%, 치매 전담형의 경우 80%로 정해져 있어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큰 상황임.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기존 6개소의 운영비만이 책정되어 있으며 추가설치를 위한 예산은 배정되어 있지 않아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옹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또한 의미 있는 확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표15> 노인요양시설 확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증감(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노인요양시설 확충	66,917	104,602	61,990	61,990	△4,927

## 2. 요구사항

- 정부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으로 발표함. 이를 이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국고부담율을 치매 전담형 시설과 같은 80%로 높일 필요가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 확대

## 1. 현황

- 대다수의 영아 가정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휴직 뿐 아니라 조부모, 친인척, 그리고 사적으로 고용한 노동자가 돌봄 노동을 하는 등 사적 돌봄이 고비용으로 진행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공보육 이용률 40% 확충을 약속한 바 있으나 2020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시설수 대비 14%, 아동수 대비 20.3%밖에 되지 않음.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609억 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196억 원으로 2021년 240억 원에서 일부 감소함. 신규 물량은 33개소에 불과하고 대부분 지난해 계속사업비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일몰에 가까운 접근을 하고 있고, 이대로라면 국정과제인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보육서비스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임에도 전년대비 43%가 감액된 39억 원이 편성됨.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사업이 종료된 영향을 받았으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증개축은 5개소, 개보수는 200개소, 장비지원 279개소, 그리고 장애아시설 개보수 3개소에 불과한 사업량으로 2019년 983개소 지원, 2020년 1,004개 지원에 비해 최소 수준임.

<표16> 어린이집 확충/기능보강 예산  
(단위: 백만 원, %)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증감(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어린이집 확충	60,881	60,881	60,903	60,903	22
어린이집 기능보강	6,866	6,866	3,859	3,859	△3,007

## 2. 요구사항

-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던 공공보육이용률 40% 달성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더욱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함.
-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의 경우 지난 2년 간 예산 집행률이 100%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액됨.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능보강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원 직영 종합재가센터 모든 지자체 설치

## 1. 현황

- 합계출산율 감소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한국은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1인 가구 증가, 장애인-노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확대로의 정책환경 변화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
- '20년 기준 노인, 장애인, 보육 사회서비스 예산은 11.4조 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최소8.7%~최대23.7% 재정투입 확대. 그러나 '19년 기준 사회서비스 시설 5.9만 개 중 민간운영 88%, 민간위탁11%, 공공 직영1%로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 비중이 압도적.
-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 절대다수가 국가 및 지자체 예산(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보육-기관보육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단가)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과의 현격한 질 격차 발생.

<표17>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안(B)	증감률(B-A)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11,551	14,723	24,610	67.2

## 2. 요구사항

- 종합재가센터 신규설치 및 운영 사업비 증액
  - 기초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 직영 종합재가센터 설립 및 이를 통한 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아이돌봄(정부위탁사업 직접 수탁)서비스 제공 확대.
  - 사회서비스원 직영 종합재가센터 106개 확충에 따른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3,180개 +  $\alpha$  (상용직 월급제 기준)
-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현행 50% → 70% 상향
  - 사회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확대 및 지역간 사회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해 서울 외 지방의 사회서비스원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을 현행 50% ⇒ 70%로 상향

#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차별 해소

## 1. 현황

- 국공립·법인, 취약보육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2021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고 국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2022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는 전년 대비 1.4% 인상하여 월 265만 원 기준으로 편성되었음
- 그러나 전체 보육교사 24만 명 중 71%인 17만 명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90%가 최저임금 수준임.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가 2020년 12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만 2,223명을 대상으로 기본급 실태조사한 결과, 월 급여가 179만 원(2020년 최저임금)이라는 응답이 1만 923명(84.9%)으로 가장 많았음
- 2021년 보건복지부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를 최소 국공립 인건비 기준표의 1호봉으로 하라는 지침을 발표하였으나 제한적일 뿐 아니라 권고에 불과하여 현장 적용에 한계가 많음

<표18>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안(B)	증감률(B-A)
영유아보육료 지원	3,416,221	3,395,239	3,202,771	-5.7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465,430	1,624,972	1,688,041	3.9

## 2. 요구사항

-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국공립 인건비 기준 적용
  - 2022년 현장 실태 파악 후 필요 예산 산출하여 2023년 예산에 반영
  - 권고 수준을 넘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민간, 가정 어린이집 인건비 성 지원을 기관지원금에서 분리하여 인건비로만 지급되도록 개선
  -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기관보육료 내 인건비를 포함하여 교부하는 것을 개선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3133-331)’내 인건비성 예산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3140-404)’로 통합하여 편성하고, 어린이집에서 지출할 때에 인건비로만 지출하도록 관리



# 필수노동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예산 책정 요구

## 1. 현황

- 돌봄노동자가 110만 명에 육박할 만큼 돌봄서비스의 규모는 커졌지만,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임.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89%가 최저임금, 재가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대다수가 최저시급제, 아이돌보미, 산모건강관리사, 노인생활지원사 등 재가방문돌봄 노동자들은 일상적 고용불안과 최저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음.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없이 불가능함.
- 돌봄일자리는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출발하여 임금기준이 최저임금으로 책정되고 1년기간제 계약으로 해고와 실업을 반복하고 있음. 노인돌봄의 핵심 사업인 노인생활지원사가 대표적.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 재가요양, 산모건강관리 등 돌봄노동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시간에 맞춰서 노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이용자의 사정으로 서비스제공이 중단되거나 거부할 경우 곧바로 해고가 되는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임.
-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매일 코로나 자가진단 검사를 하면서 이용자를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처우개선은커녕 오히려 감염을 우려한 이용자의 서비스중단 때문에 생계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임. 더구나 대부분의 돌봄일자리의 관리 책임을 가진 복지부는 코로나 대확산 기간(22.2~4)에 장기요양시설 노동자에게만 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또한 국가재정이 아닌 사회보험료에서 지출함.
- 저출생초고령화 사회에서 돌봄노동은 필수불가결하고 더욱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현재의 처우와 임금조건으로는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필수노동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가야하고 올해에는 최소 1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함.

돌봄노동자자 구분 (2020.12. 노동부)	인원 (108.7만)
요양보호사	45만명
장애인활동지원사	8.2만명
장애아돌봄지원사	0.3만명
가사·육아도우미	15.6만명
아이돌보미	2.3만명
사회복지시설종사자	8.3만명
보육교사	24만명
노인돌봄 종사자	2.9만명
가사·간병서비스 종사자	0.4만명
산모신생아서비스 종사자	1.7만명

## 2. 요구사항

- 비용추계 : 10만원 \* 12개월 \* 108.7만 명 = 1,304,400백만 원

# 공공병상 확충

---

## 1. 현황

- 한국에 공공병상은 절대 부족함. 2018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3,937곳 가운데 공공의료기관 수는 224곳으로 전체의 5.7%임.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도 10.2%로, OECD 회원국 평균 71.4%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임. 한국의 인구 1천명 당 공공병상은 1.3개로 최하위권이며 OECD 평균 약 3.0에 턱 없이 못 미침. 이는 감염병 위기 대처 능력 부재, 민간병원의 수익추구를 위한 과잉진료, 취약계층 진료와 필수·응급진료 과소, 지역 의료격차의 주된 원인임.
- 그럼에도 공공병상 확충예산은 매년 거의 '0원'에 가까우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일부 공공병원의 설계비, 연구용역비에 그치는 등 사실상 유의미하게 책정되지 않고 있음. 이는 정부 차원의 공공병원 확충 계획 자체가 극히 부족하고 장기적으로 20%~30%까지 확충할 비전도 없기 때문임.

## 2. 요구사항

- '공공병원 꼴찌국가'에서 공공병원 최소 두 배(전체 병상의 20%)확대로 나아가야 함. OECD 평균 75%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5년 안에 최소한 20%에 도달하도록 공공병상을 늘려야 함.
  - 1) 공공병원 신축  
내가 사는 지역에 공공병원이 없다면 설립을 : 70개 중진료권 중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곳(약 30개 지역)에 모두 공공병원을 2개소 이상 신설해야 함. 300~500병상 급 공공병원을 세워야 함.  
공공병원이 부족한 곳에 확대를 : 70개 중진료권 중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있는 곳(약 40개 지역)들도 공공병원을 최소 1개 이상 더 신설해야 함.
  - 2) 공공병원 증축  
지방의료원의 경우 대부분 300병상 미만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공공의료기관이면서 300병상 미만인 35개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모두 300~500병상으로 증축해야 함.
  - 3) 민간병원 공공화  
민간병원들을 적극 매입해 공공의료기관으로 만들어야 함. 과잉진료의 원인이 되는 민간의 과잉병상은 통제하고 공공병상으로 전환해 공익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함.

#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 준수 및 지원비율 상향

## 1. 현황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는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함.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헌법 제 34조에 의거한 국가의 의무임.
- 그러나 최근 10년 간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20%**를 지킨 적은 단 한번도 없음. 이명박 정부가 **16.4%**, 박근혜 정부가 **15.3%**를 지원했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내 **13%**대의 지원율을 보임. 2020년 기준 지원율이 **14.6%**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2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임. 역대 정부들은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과소 추계하거나 과소 추계된 예상 수입액 대비로도 법정 기준을 어겨왔고, 사후정산도 하지 않음.
- OECD 국가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높고 또 이 비율을 갈수록 늘리는 추세임. 프랑스는 **52.3%**, 일본 **27.4%**, 대만 **23%** 등으로 모두 우리나라보다 높은 지원율을 보임. 특히 프랑스는 2018년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0%**로 사실상 폐지하였음. 팬데믹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 만큼,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이 현저히 더 강화되어야 함.

<표19>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일반회계	지원액	40,715	43,359	48,008	52,958	55,717	52,003	48,737	51,910	59,589	73,350
	지원율	12.6	12.1	12.4	12.8	12.6	11.0	9.7	9.7	10.1	11.6
건강증진 기금	지원액	9,568	10,073	9,986	10,191	15,185	18,914	19,011	19,731	18,082	18,801
	지원율	3.3	3.3	2.9	2.5	3.4	4.0	3.8	3.7	3.1	3.0
계	지원액	50,283	53,432	57,994	63,149	70,902	70,917	67,748	71,641	77,671	92,151
	지원율	<b>15.9</b>	<b>15.4</b>	<b>15.3</b>	<b>15.3</b>	<b>16.0</b>	<b>15.0</b>	<b>13.5</b>	<b>13.4</b>	<b>13.2</b>	<b>14.6</b>
미납액 (연도별)		<b>14,516</b>	<b>18,275</b>	<b>19,229</b>	<b>19,332</b>	<b>17,193</b>	<b>23,696</b>	<b>32,272</b>	<b>35,642</b>	<b>39,815</b>	<b>34,071</b>

## 2. 요구사항

### 1) 국고지원 법적 의무 준수

- 정부는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2022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 지원해야 함. 2022년에는 추세 상 약 70조원 수입이 예상되며 20%에 해당하는 약 **14조 원**을 반드시 지원해야 함.
- 정부는 2022년까지 미지급한 금액을 지금이라도 사후정산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해야 함.

### 2) 국고지원 한시조항 폐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국고지원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음.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하고 있는 조항으로 한시 지원 규정을 삭제해야 함.

### 3) 국고지원 비율 상향

- 한국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정부가 법을 다 지켜도 예상수입액의 20%(보험료 총재정의 16.7%)로 상술한 바와 같이 OECD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부족함. 국고지원 비율을 늘려야 함.
-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연례적으로 적게 지원해왔음.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명시해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함.

#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

---

## 1. 현황

- 한 평짜리 방, 지하, 옥탑방, 고시원처럼 최저주거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지옥고’에 220만(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소득정체와 집값 상승 등 전월세 문제로 인해 무주택 가구들의 주거불안도 심각한 상황임.
-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호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1,192,074호(2020년 임대주택 통계)로 전체 주택의 5.5% 수준에 불과함. 반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경쟁률 및 입주 의향이 높고(전체 가구의 35.6%, 2020 주거실태조사), 입주자들의 만족도(94.4%, 2020주거실태조사)가 매우 높음.
- 또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110만 호인데, 임대주택의 운영·관리 및 입주자 지원에 약 7조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경상 예산이 거의 전무함.

## 2. 요구사항

-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담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2배 이상 확대하는 예산 확충이 필요함.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과 주택의 주거성능 확보 등 임대주택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편성이 필요함.

# 장애인의 복지 분야

# 장애인 활동지원사 최저임금 보장

## 1. 현황

-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 장애인활동지원사 2022년 급여 단가는 14,805원으로 연차수당, 휴일수당 등을 고려할 경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실제 보조 금액은 67%).
- 2019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장애인활동지원사 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46.7%가 월 평균 임금이 150만 원 미만으로 저임금 문제가 심각.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을 위한 단가 인상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음.

<표20> 장애인활동지원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안(B)	증감률(B-A)
장애인활동지원	1,301,302	1,521,719	1,740,523	15.5

\*2021년 예산은 추경 포함

## 2. 요구사항

- 급여 단가 인상
  - 2022년 급여 단가는 14,805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최저임금도 준수하기 어려움
  - 최저임금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 가능한 적정 임금 보장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 1. 현황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로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 서비스임.
- 2019년 7월,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 체계 구축을 표방하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함께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도입하였음. 등급제 폐지는 대상자 수의 확대에 이어졌으나, 부족한 예산에 맞춰 설계된 판정 도구로 인해 기존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시간이 하락하고 85%의 이용자가 하루 5시간 이하의 급여 구간에 위치하는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2022년 이용자들의 평균 시간은 127시간, 이를 150시간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판정 도구를 개선함으로써 당사자 입장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도모하여야 함.
- 또한 현재 서비스 수가는 최저임금 기준 평균 급여(법정수당, 사업주 부담금 포함)로 최대 98%가 지급되는 구조이며, 노동 강도 대비 적은 수가와 실효성 없는 가산 수당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력 미매칭, 기관의 편법 운영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활동지원사와 중증장애인의 권리 보장, 운영 기관의 안정화를 위해 수가와 가산 수당을 현실적 조건에 부합하도록 인상하여야 함.
- 또한 2020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의 본문 중 ‘만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에 대해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입법자는 12월 31일까지 이를 개정하여야 함. 해당 인원은 2021년 말 기준으로 25,22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활동지원 예산은 해당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함.

## 2. 요구사항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활동지원제도 안정화를 위한 수가 인상(14,805원 → 17,000원) / 만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 등록 장애인의 서비스 유입을 위한 대상자 증원(107,000명 → 135,500명) / 개인별 지원 강화를 위한 평균시간 확대(127시간 → 150시간) / 중증장애인 가산수당 확대(수당 2,000원 → 5,000원, 대상자 4,000명 → 5,000명)

#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확대

## 1. 현황

-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21.8.)> 발표 이후, 시범사업으로 최초로 예산이 21.5억 원 반영됨.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년의 기간 동안 탈시설 이행 계획 수립.
- 그러나,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 21.5억 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인 6,224억 원과 비교해보면 국가정책 불공정의 상징이며,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9조, 일반논평5의 실행에 매우 부적합한 예산 반영임.

<표21> '23년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19 결산	2022 예산(A)	2021 예산안(B)	증감률(B-A)
어린이집 확충	61,550	76,632	60,881	△15,751
어린이집 기능보강	30,027	19,777	6,866	△12,911

## 2. 요구사항

-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UN CRPD에 근거하여 탈시설을 강화하고 시설소규모화로 왜곡되지 않도록 탈시설 초기 안정적인 예산 구축이 필요함.
- 자립지원금 제공 : 13,400백만 원(순증)  
산출근거 : 2,000만 원 × 1,000명 × 67%
-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533백만 원 → 32,803백만 원,  
산출근거 : 17,000원 × 1,000명 × 240시간 × 12개월 × 67%
-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제공 : 시범사업 1,621백만 원 → 34,558백만 원  
※ 주거서비스제공인력, 서비스기관운영, 주거환경개선, 보조기기, 건강검진비, 치과진료비, 심리행동지원비, 주거서비스운영개선 및 모니터링, 인력교육비 등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

## 1. 현황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접근이 열악한 교통약자(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휠체어 탑승 가능한 설비를 갖춘 콜택시를 일컫음.
- 그러나 중앙정부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에 대하여 차량 도입(매입)에 필요한 비용만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방비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음. 대중교통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는 이유로, 장애인특별운송사업비(운영비)를 중앙정부 예산 보조 제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그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지방비 부족을 핑계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 내부 자료('20년 기준)에 따르면, 161개 지자체 중 운영시간이 24시간인 지자체는 36%에 불과하며, 08~24시까지(28%), 주간만 운행(36%)로 나타남.)
- 장애계는 지역간 이동 차별 철폐를 위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국비 지원 의무화를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추진하였지만, 2021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하여 임의 규정('할 수 있다')으로 통과되었음.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에 조항이 수정되어 통과된 것임.

## 2. 요구사항

-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을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변경
-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추가하고,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의 기준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반영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국비 지원

---

## 1. 현황

-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 내용이 달라야 하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음. 지난 2016년 평생교육법이 개정 시행되었으나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향상되지 않고 있기에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추진 중임. (현재, 유기홍의원과 조해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 계류 중.)
-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대표발의, 조해진대표발의)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장애인이 자유롭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지원은 지방 재정 상황에 따라 17개 시·도의 지원이 각기 다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해석으로 인하여 현행 평생교육법에는 국가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운영비 지원에서 국가는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만 지원하고 있음.
- 교육부도 '학교 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매뉴얼(2021. 6. 30.발표)'을 발표함에 따라 예산 변화 필요함.

## 2. 요구사항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비: 13,487백만 원 편성
- 330백만 원(1개 시설 연간 운영비) × 61개소 × 67%(국고보조율)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을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변경
-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추가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의 기준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반영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

## 1. 현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국가가 이행해야 할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상당한 비율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최종중증장애인들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참여가능한 활동수준으로 맞추어서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권교육’ 3대 직무로 구성하여야 함. 3대 직무 수행을 통해 권리를 생산하는 목표는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임.
- 2022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중증장애인 채용 규모는 서울시 350명, 경기도 200명, 전라남도 82명, 전라북도 10명, 경상남도 10명, 춘천시 44명 등 약 696명을 고용할 계획에 있으나, 이는 모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음.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참여하는 최종중증장애인의 노동이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 도입 및 예산확보 필요.

## 2. 요구사항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법적 근거 마련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주 20시간 5,000명 지원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참여기관 전담인력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지원, 1,000명 지원 (※ 최종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의 비율로 전담인력 배치)

기후위기 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2023** 예산 확충 요구안

---

**아동 인권**  
**분야**

#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자원의 할당

---

## 1. 현황

- 아동의 보육 지원은 크게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분할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대부분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이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다음으로 높음. 여성가족부도 영아종일제 돌봄, 시간제돌봄, 아이돌보미 사업관리 및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등이 일반회계의 43.77%임. 돌봄을 대신하는 서비스 지원에 치중하고 극히 적은 금액의 현금지원 사업이 다소 확대되기는 했지만, 가정환경에 대한 아동권리를 어떻게 지원하고 증진할지를 목적에 둔 정책이라 보기 어려움.
- 모든 부처의 대다수 아동정책이 '내국인'을 전제하여, 일부 외국인정책 외에 이주아동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한 계획도 사실상 부재함. 아동기는 최소한 만 18세 미만의 폭넓은 연령대를 아우르는데, 발달단계에 적합한 다양한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섬세한 고려도 없음.
- 근본적으로 아동인권을 총괄하는 일관된 법체계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현실에서, 아동예산은 각 부처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으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업에서 아동의 존재성은 쉽게 간과되고 있음. 2017년 기준 OECD 평균 아동청소년 예산 비중 2.1%에 비해, 한국의 아동청소년 예산은 1.1%였으며, 지역격차는 더욱 큼. 각 부처에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예산할당 비중도 극히 미미함..
- 아동권리협약 이행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31억원)은 대부분 아동학대 대응 외 인식개선(홍보)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범국가 단위의 일관된 정책 이행과 관리를 위한 계획은 부재함. 법무부의 아동인권 증진 사업(258백만원)도 아동학대에 국한된 사업지원 예산이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추진기반 구축 예산은 일반회계의 0.21%에 불과함.

## 2. 요구사항

-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관점에서 아동정책이 수립되고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아동정책기본계획 이행관리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이 명시적으로 편성되어야 함.
- 관련 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이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지원과 예방적 사례관리를 포함한 가정 지원이 필요함. 또한, 시설보호 외 아동·청소년의 주거선택권을 확보하며, 이주아동을 배제하지 않는 사업계획,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할당,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국비지원 계획 등이 다각도로 고려되어야 함.

#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대안양육제도 원칙 이행

## 1. 현황

- 기존에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에 분산되어 있던 아동학대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환영할 만함.
- 2020년 기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현황은 시설보호가 4,120건(74.7%), 가정보호(원가정보호, 가정위탁, 입양 등)가 1,393건(25.3%)으로 가정보호보다는 여전히 시설보호 중심임. 시설보호 아동의 69.8%는 대형시설에 배치되었음. 이는 가정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규모 시설 보호를 우선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 및 유엔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에 반함.
- 한편,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우선되는 입양체계를 확립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22년 예산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증원(524(21')-> 715명(22')) 외 관련된 계획은 부재함.

## 2. 요구사항

-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등 관련 시설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추가 배치 외에도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이고 양질의 공적 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증원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도 필요함.
- 보호대상아동과 관련된 예산으로 자립지원전담인력 120명 신규 배치, 아동그룹홈 12개소 신규설치와 신규인력 172명 증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그룹홈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은 소규모에 그치고 있고 가정위탁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대안양육제도의 국제기준을 이행할 수 없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아동의 탈시설보호를 위한 로드맵 마련과 단계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시급함.
- 기존 민간 입양기관에 일임되어 있던 입양 업무를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공이 책임지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상담, 교육, 결연, 사후관리 및 사후서비스,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까지 전 입양 절차의 관장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함.



#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입

## 1. 현황

- 누리과정 지원예산의 지원단가 증액과 2021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의 실현은 환영할 만한 일임(2021년 예산 대비 누리과정은 2.2%, 고교무상교육은 3.6% 감액되었으나 이는 대상인원 변동 등의 사정에 기한 것으로 산출의 기초가 된 평균학비는 전년과 동일하거나 인상된 수준임). 일부 사업에서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예산(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기초학력내실화를 위한 사다리프로젝트)이 소폭 늘어난 것도 긍정적 변화임
- 그러나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장애아교육지원, 취약계층 과학적성인재발굴, 영어교육소외계층 대상 영어캠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 등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예산항목이 존재하기는 하나 해당 예산항목이 각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적음. 나아가 교육급여의 경우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1회 331천원~554천원에 불과함. 통계청의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평균 367천원(각급학교별 329천원~419천원)인 점을 고려하면, 수업료와 교과서대금을 모두 합쳐 지급받는 현 교육급여로는 적절한 교육기회 제공과 자립능력 배양이라는 교육급여의 목적에도 충분하지 않은 점을 알 수 있음.

## 2. 요구사항

-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교재비 및 EBS컨텐츠 지원 명목, 10,094,000원 신규 확충)이 2022년 예산에 신설되었으나, 1회성이 아닌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함. 소외계층 대상 영어캠프 사업도 예산항목은 달리 없는데, 예산 편성 또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센터 내 사업계획이 필요함. 궁극적으로 형식적 교육기회의 확대(보편적 교육복지)뿐 아니라 교육접근성 및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교육복지 예산 투입이 필요함.
- 전체 장애학생 교육지원예산은 13,005백만원으로 2021년 대비 316백만원 감소(2.4% 감소)하였고, 국립특수학교의 학력증진비용에서 시각·청각장애 특성화지원센터 확충 비용도 달리 편성되지 않은 결과 예산이 5.7%감축되었음. 특수교육 수요자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현재에도 턱없이 열악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예산이 더욱 적극적으로 확충되어야 함.
-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2024년까지 필요한 비용 중 47.5%를 국가가 부담하고, 시도교육청이 47.5%를, 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이후의 재원확보방안도 확정되지 않은 실정임. 그러나 무상교육과 같은 전국단위 보편복지의 경우 국가 재정으로 안정된 교육복지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후기청소년 대상 사업 개발 및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예산 신설

---

## 1. 현황

- 2022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 4,650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하며, 액수로도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적다. 이 중 2,716억 원 가량이 청소년 관련 사업에 투입됨.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관련 예산은 청소년 정책 추진기반 구축(1,347백만 원), 청소년 정책참여지원(2,752백만 원) 등 청소년 정책 관련 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12,618백만 원), 청소년 활동지원(19,148백만 원) 등 청소년 직접 지원사업 외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25,964백만 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산하 기관의 운영비 지원 형식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
- 만 19세 ~ 만 24세 후기 청소년 대상 사업의 종류가 많지 않고, 올해 비로소 청소년부모 지원 대책이 수립 및 시행될 예정이나 예산 책정은 미미한 수준이고 학습 지원에 치중한 사업 운영이 우려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국적 아동 청소년의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나 2022년 예산 총 3,603백만 원으로 주로 한국어교육, 진로교육 등 대안적 교육에 관한 예산에 그칠 뿐 복지적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님.

## 2. 요구사항

- 후기청소년 대상 사업 개발 및 확대를 통해 청소년부모 지원을 강화하고 상담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후기 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서비스 확대.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복지지원 예산 신설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가령, 학대피해 이주아동에 대한 시설입소비용의 국가지원 신설).

# 아동인권에 기반한 아동사법제도 운영

## 1. 현황

- 2020년 기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수용률은 정원 대비 92.7%였으며, 특히 서울소년원(121.2%), 안양소년원(128.8%)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과밀수용은 심각함. 수용인원 4명 이하 원칙(보호소년법 제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의 생활실이 26%였음(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1).
- 법무부 전체 사업 중 아동·청소년 범죄예방에 특화된 예산(소년원생수용, 청소년비행예방)은 일반회계의 0.71%에 불과함.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예산이 19.3% 증액되긴 하였으나, 소년원(10개)·소년분류심사원(1개) 외 전국의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위치추적관제센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소년보호를 위한 인프라 개선에 할당된 예산으로 보기 어려움. 2021년 중순부터 단계적인 소년분류심사원 추가 설치에 대한 법무부 발표도 있었으나, 관련된 예산은 찾아볼 수 없음. 보호관찰활동도 3.9% 늘어났으나,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은 여전히 100여명으로, OECD 평균의 3배 수준임.

<표22> 소년원생 수용  
원)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B-A)
소년원생 수용	20,316	21,796	23,518	△1,722(7.9%)

- 한편,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전국의 각 수용원에 배치되어 있으며, 김천소년교도소에도 소년 수형자(19세 미만)와 소년 처우 수형자(19세 이상~23세 미만)외에 1심 미결수 성인들이 수용되어 있어. 소년에 특화된 전문 수용시설이 부재한 실태이며, 법무부의 각 교정활동 사업도 소년교정을 별도로 계획하는 세분화된 예산을 두고 있지 않음.

## 2. 요구사항

- 소년의 범죄율과 재범률은 현행 소년보호 및 범죄예방 정책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자원 투입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음. 소년전담법관, 소년보호시설 확충 및 시설환경·운영 프로그램 개선, 법률지원(의무적 국선보조인) 마련, 비구금형 촉진 등 아동사법 각 단계에 인적·재정적·물적 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함.
- 특히 소년의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기간만 사용하며, 아동사법 전반에 비구금형 처우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함. 다양한 사회 내 처우조치를 통해 다이버전 제도를 실천하며, 소년전담 보호관찰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 할당되어야 함.

# 아동의 놀이, 문화 및 여가에 대한 국가 단위의 특화된 예산 필요

## 1. 현황

- 한국의 과도한 경쟁적 교육환경은 학업 스트레스, 수면·운동·여가 활동시간 부족, 또래관계 결핍 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아동기를 박탈하는 문제”로 나타남(스스로지킴이(2019), 제5·6차 아동보고서).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 각종 외부활동이 극히 제한되며, 아동·청소년의 놀이·여가, 휴식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위축된 현실임.
- 정부는 2019. 5. 23.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창의성,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혁신’ 과제를 4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2019. 1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놀이혁신위원회를 설치함. 2020년에는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1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각 1억 원의 국비를 지원했으나 이후 관련된 후속 사업은 시행되지 않았음.
-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역사회 주도의 놀이 확산 지원을 위한 예산 책정을 새로이 하였으나, 1억 원에 그침.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해 예년보다 대폭 늘어난 약 191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93.5%가 청소년 수련시설 내지 센터 설립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예산도 대부분 학교, 박물관 및 도서관, 대회 운영(민간이전) 등 인프라 구축에 할당되어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부 예산은 문화예술활동, 국내여행, 생활체육 증진을 목적으로 만 5-6세 이상 아동·청소년에게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나, 아동기의 다양한 발달정도 및 지역의 문화 환경, 인프라에 특화된 계획은 부재함.

## 2. 요구사항

- 노키즈존, 노틴에이지존으로 나타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시민사회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임. 국가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하고 모든 아동의 놀이 및 오락활동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다양한 공동체 공간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장려하기 위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대화를 증진하길 장려할 책무가 있음(CRC/C/GC/17, para. 38). 정부는 지역사회 놀이 환경을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하며, 이를 전담할 총괄부처나 전담부서 지정, 운영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함.
- 모든 연령대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각각 연령에 적합한 휴식, 놀이 및 여가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 접근성 보장, 직접 지원책 마련 등을 위한 부처 단위의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이 필요함.

기후위기 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2023** 예산 확충 요구안

---

**공공 교통**  
**분야**

#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 국비 보조

---

## 1. 현황

-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5개년 누적 적자액이 6조 8,1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며, 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운수 수입 급감에 따른 당기순손실이 증가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악화가 가중되는 형편임.
  -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대비 '20년도 당기순손실 70%(7,480억 원) 증가 및 '19년도 대비 '21년도 당기순손실 70%(7,529억 원) 증가 예상
- 도시철도 개통 후 30년 이상이 경과(서울, 부산 등)된 노후 전동차와 노후 시설물 개량을 위해 막대한 재투자 비용이 소요되는데 제 때 투자를 하지 못해 시민 안전이 위협 받고 있음.
  - 전국 6개 도시철도의 노후 전동차 및 노후 시설물 교체를 위해 4조 6,237억 원('21~'25년 연평균 9,247억 원) 투입 예정
- 정부의 정책과 법령에 따라 '84년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임승차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이후 국가유공자('85년), 장애인('91년) 등으로 확대되었음.
  - 법 시행 초기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9%에 불과해서 운영기관의 부담을 주지 않았으나 '20년 기준 15.7%로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무임승차 인원이 늘면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근 5년간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5,539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야기하고 있음.
  - 노인 인구 비중 : '80년 5.9% ⇨ '20년 15.7% ⇨ '25년 20.3% ⇨ '30년 25.0%

## 2. 요구사항

-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액 국고 지원.
  - 현재 철도공사에 대해서만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도시철도 노후 시설·차량 개선 지원

## 1. 현황

- 무임수송 손실, 국고 지원 부족으로 노후 시설·차량 방치
  - 무임수송 손실, 원가에 못미치는 운임 등으로 누적된 적자와 코로나19로 심각한 재정위기 봉착 → '20년까지 누적 적자 16조 684억 원
  - 최근 4년간 노후시설 등 투자필요액은 1조 3,865억 원이었으나 투자재원 확보 실패로 6,200억 원(약 44%수준)만 투자. 그 중 국비는 1,380억 원으로 총 소요금액의 10% 수준임
- 위험수준 시설 급증, 시민 안전 위협
  - 시설물 성능평가 결과 위험수준인 C·D등급 비율 증가 추세('18년 평가기준)
  - (1~4호선) 73.8%, (5~8호선) 62.2% → 현시점 성능 재평가시 시설 노후도 더욱 심화
  - 향후 1조 6,942억 원의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나 투자비 확보 불가로 개선물량 축소 및 사용기간 억지연장 ⇨ 시민 안전위협

<표23>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안(B)	증감률(B-A)
도시철도노후시설개선지원	108,570	36,911	53,402	44.7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	-	113,200	91,168	-19.5

## 2. 요구사항

- 도시철도노후시설개선지원 사업 : 국비지원율 30% → 40% 상향, 지원 대상 확대.
  - 국민 안전에 직결된 궤도·건축·구조물 분야 추가.
-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 사업 : 국비지원율 25% → 40% 상향.

기후위기 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2023** 예산 확충 요구안

---

**노동**

**분야**



# 취약 노동자 소득보장 확대 예산

## 1. 현황

-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위기는 특수고용, 임시·일용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소득감소의 심각한 타격을 입혔음.
- 지난 3월 한국행정연구원 발간 보고서(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2021년 평균 월 소득(세전)이 지난 2019년보다 줄었다고 답변했으며,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자의 평균 월 소득 감소 금액은 124만 8,000원이었음.
- 그러나, 한국의 사회안전망의 한계로 인하여 소득감소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였음. 정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나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대책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으나, 불안정 고용 취약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존 사회보장제도 외에는 추가적인 소득보장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포커스(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KDI FOCUS)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대상 한시적 현금지원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3분기 2.0%과 2021년 1분기 2.7%로 빈곤감소 효과가 일정부분 나타났으나, 임시노동자는 같은기간 0.3%, -0.3%으로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을 보였음. 자영업자와 달리 임시노동자는 추가 소득지원 대책이 없는 결과로 나타난 것임.
- 취약 노동자들은 코로나 위기로 실직하더라도 고용보험 미가입(취업자 49% 미가입)되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였음. 또한, 고용은 유지되어도 소득감소로 인한 지원이 없어 생계의 어려움을 감내해야하는 실정임.
-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았고, 가장 길게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어 회복을 위한 지원과 소득보장체계 마련 및 예산이 필요함.

## 2. 요구사항

- 취약 노동자 코로나 생계회복 지원금 예산 마련
  - 소득이 감소한 모든 취약 노동자의 코로나 생계회복 지원 예산 마련이 필요함.
  - 취약노동자 선정에 있어 자산, 소득요건을 최대한 완화한 기준으로 소득감소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득감소 확인시 생계회복 지원금(예) 월 100만 원\*12개월) 지급.
- 근로장려금 확대 예산 마련
  - 근로장려금 매월 지급, 지급수준 확대, 자산·소득요건 완화 : 일을 하는 노동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또는 이전 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 1~2회 지급하여, 코로나와 같은 경제적 위기에 대응한 지원으로서 한계가 있음.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통하여 매월 지급할 필요. 지급수준도 확대하고, 자산요건이나 소득요건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조정하기 위한 예산 검토 필요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 요구

## 1. 현황

-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2021.3월 노동부 자료분석), 약 100만명
  -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약 100만명 : 전환자(무기계약직) 약 40만명, 미전환자 약 20만명, 민간위탁 약 20만명, 통계누락 (방과후강사, 주민센터강사, 법무부 비정규직 등) 약 20만명 : 무기계약직 약 40만명, 미전환자 약 20만명, 민간위탁 약 20만명, 통계 누락 (방과후강사 등) 약 20만명

구분	계	기간제, 파견·용역(미전환)	무기계약직		
			소계	기존	전환
합계	627,552	216,604	411,488	211,950	199,538
중앙행정기관	57,288	13,465	43,823	20,582	23,241
자치단체	136,892	58,486	78,406	52,939	25,467
교육기관	229,710	87,676	142,034	104,287	37,747
공공기관	176,165	46,122	130,043	24,676	105,367
지방공기업	27,497	10,315	17,182	9,466	7,716

\* 3단계 비정규직 (민간위탁) : 195,736명 전환결과 미확인 / 대부분 미전환 예상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평가
  - 1단계 기관, 전체 비정규직 41만명 중에서 상시지속업무 31만명, 20.5만명 전환계획 중 약 20만명 전환(파견·용역 63%, 기간제 37%).
  - 공공기관 전환자의 약 50%가 자회사로 전환 (49,821명)
  - 3단계 대상이었던 민간위탁은 기관별 자율판단으로 전환여부 결정, 사실상 정규직 전환정책 폐기. 대부분 미전환(콜센터, 돌봄, 생활폐기물 등).
  - 소위 복지 3중세트 (급식비, 명절상여금 80~100만 원, 맞춤형복지비 40만 원) 이외의 처우개선 진행안됨. 전환 전과 후의 처우개선 달라지지 않은 채 상대적으로 고용만 안정된 무기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뿐임.
- 공무직위원회 현황
  - 2020. 3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국무총리훈령, 3년 한시적)
  - 처우개선 턱없이 부족.
  - 2022년 최종 정부예산 : 공무원 임금인상률 1.4%, 공무직 1.4%+0.4%, 명절상여금 기존 80만 원→100만 원 (+20만 원 인상)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만 적용).
  - 2022년 국회 예산심의 증액 : 맞춤형복지비 기존 40만 원→50만 원(+10만 원 인상)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만 적용).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020.12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마련.

## 2. 요구사항

- 복리후생성격의 수당 동일지급 (1인당 연 200만 원 증액) :  $200\text{만 원} * 100\text{만명} = 2,000,000\text{백만 원}$ .

기후위기 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2023** 예산 확충 요구안

---

**국방  
분야**

#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위한 핵·WMD 대응 체계 (한국형 3축 체계) 사업 예산 삭감

## 1. 현황

-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과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을 '복원'하겠다고 공약하였음. 그러나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핵·WMD 대응 체계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추진되어왔던 것임. 해당 사업에 2017년~2021년 5년 동안 약 25조 원이 집행되었고, 2022년에도 44개 사업에 약 4.6조 원이 편성되었음.
- 지난 2018년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과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불가침 등을 합의하였음. 그러나 그후에도 남한의 군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포함한 공격적인 군사 전략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한국형 3축 체계(핵·WMD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은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임. 윤석열 당선인은 킬체인 등 선제 타격 능력 확보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선제 공격이나 예방적 전쟁을 금지한 유엔 헌장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대한민국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 선제 타격을 결정할만큼 완벽한 탐지를 보장할 수 없기에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계획임. 선제 타격론이 야기할 안보 딜레마의 격화 역시 중대한 문제임.
- 한반도 핵 갈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상태와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으며, 2021년 남한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했음. 북한이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 개발을 멈추지 않는 것은 재래식 군사력과 경제력의 열세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임. 대화 여건 조성 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 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대화를 어렵게 만들어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

## 2. 요구사항

- 선제 타격을 포함한 작전 개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 계획은 전면 수정해야 하며, 관련 사업들도 조정해야 함.
-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는 방위력 개선비를 삭감하고, 한정된 국가 예산은 사회 불평등 해소, 기후 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 등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해야 함.

# 한국군에 불필요한 과잉 전력 경항공모함 예산 삭감

## 1. 현황

- 경항공모함 사업은 2021년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관련 예산 대부분이 삭감되었음. 그러나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의 심사 결과를 되돌려 관련 예산을 재편성하면서, 2022년 설계 착수 예산 72억 원이 편성됨.
- 그러나 경항공모함은 한국군에 불필요한 과잉 전력이며 시급하게 획득해야 할 이유가 없음. 한반도 해역은 전장이 좁고 주변국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해역 보호를 위해 항모가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떨어짐. 원해 해상교통로나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 한국군이 항모 전단이라는 공격적인 군사력을 전개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임. 사업 타당성은 없는 반면 항모 전단 구성에 막대한 비용 지출이 예상됨.
- 한국이 경항공모함과 항모 전단 구성,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 등 한반도를 넘어서는 지역을 작전 범위로 하는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군이 동원될 가능성을 높임. 미중 갈등이 나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될 수 있는 한국의 해군력 강화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게 될 것임.

<표24> 관련 방위사업청 예산  
(단위: 백만 원)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증감(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경항공모함	100	100	7,188	7,188	7,088

## 2. 요구사항

- 경항공모함 도입 계획은 폐기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함.

# 실효성 떨어지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예산 삭감

## 1. 현황

- 국방부가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부르는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임. 더불어 윤석열 당선인은 “수도권 방어를 위해”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2026년까지 조기 전력화하겠다고 공약하였음.
-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간 당 최대 1만 6천여 발을 집중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규모로 평가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공 시스템으로 모두 요격하겠다는 구상은 현실성이 떨어짐.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어디에, 얼마나 많이 배치해야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임.
- 한국군은 이미 한국형 미사일 방어 계획을 통해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음. 이에 더해 장사정포까지 모든 미사일과 포탄을 요격으로 막겠다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낮음. 또한 북한 역시 요격체계를 무력화할 공격력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 방식은 끊임없이 군사적 수요를 창출할 수밖에 없음.
-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 접경 지역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충돌을 방지했던 것처럼 남북 대화와 합의 이행으로 상호 위협을 감소하고 군사적 신뢰를 쌓아가는 것임.

<표25> 관련 방위사업청 예산  
원)

(단위: 백만

구분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증감(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장사정포 요격체계(R&D)	-	-	18,924	18,924	순증

## 2. 요구사항

-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계획은 폐기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함.